

1. 사업비 관리

[2025년 K-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]



【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방법 유의사항】

○ 예산편성 항목

☑ (편성 가능) [인건비-보수/상용임금], [운영비-일반수용비(전문가활용비, 공고료및광고료, 안내홍보물제작비)/임차료/일반용역비]

○ 가족 간 거래 금지

☑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의 임직원(직계존비속 포함)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☑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과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☑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

○ 내부거래 금지

☑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내부직원(근로계약을 맺은 채용인력)에게 일반수용비(전문가활용비 등) 집행 불가

☑ (권소시업 해당)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위탁거래(일반용역비) 불가

1 인건비

가. 유의사항	○ 인건비는 보수(정규직), 상용임금(계약직)만 인정함(일용임금 편성 불가) ○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참여율과 참여기간에 따라 사업비 편성 * 사전 상위(콘진원) 승인한 단가만 인정(연봉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고정 월 급여를 기준으로 검토) * 월 급여 외 유동적인 추가수당(상여금, 휴가비, 초과근무수당 등) 불인정 * 산출근거 예시 : 2,500천원(월 급여 단가) × 8개월(참여기간) × 30%(참여율) ○ 인건비는 사전 승인된 금액대로 집행하며, 산출근거(월급여, 참여율, 참여기간) 임의 변경 시 집행액이 불인정될 수 있음 * 산출근거 변경 시, 협약변경 진행(총인건비 내에서의 인건비 변동은 가능하며, 총인건비 상향은 어려움) ○ 4대보험 가입 필수,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만 집행액으로 인정하며, 회사(사업장)부담분은 집행 불가 * 원천세는 수행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납부 필수
---------	---

**나. 부정적 집행사례
(불인정)**

○ 부정집행 사례 적발되면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

- 참여인력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집행
-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
- 외부 인력의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
 - * 외부 인력의 인건비는 전문가활용비, 일반용역비로 집행
- 내부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통해 월급 형식으로 집행
-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

-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
- 협약변경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증액하여 집행
- 수행기관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인건비 집행
- 실제 연봉보다 높게 계상된 인건비(실지급액, 참여율 과대계상)
- 본 사업과 타 지원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% 이상인 경우
- 인건비 지급 후 다시 대표이사나 타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(이면계약)

2 운영비

가. 운영비 유의사항

○ 공통사항

- 협약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
 - * 협약기간 내 계약, 납품, 검수, 지출(계산서 발행 및 이체)이 완료되어야 함
-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으로 집행 불가 (집행 시 집행취소를 통한 반납 필수)
- 견적서(비교견적서 포함)는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 발행 우선 권장

○ [전문가활용비]

- 전문가활용비는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로, 자문료, 강사료, 심사(평가)료, 원고료, 디자인료, 번역료, 감수료 등 가능 단기성·일시성 과업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임, 월급성(급여성, 정기적·지속적) 전문가활용비 집행은 불인정

개인(프리랜서)와의 과제 관련 월급성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	상용임금(계약직)
개인사업자(프리랜서)와의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	일반용역비

타 기관(A)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(B)과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	일반용역비
B가 속한 A와 인력 제공 계약(용역계약)을 맺고, B를 파견·운영하는 것으로 처리	

-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원천세는 수행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납부 필수
 - * 내부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

○ [공고료 및 광고료]

- 공고료 및 광고료는 이미 기제작된 광고 콘텐츠를 공고 및 광고 목적으로 매체에 게재 시에 집행 가능
- 이외의 콘텐츠 제작 등 타 과업을 포함한 광고 집행의 경우라면, 일반용역비 편성

이미 제작된 콘텐츠 또는 광고물을 특정 매체에 게재 (광고 슬롯 집행) ex) 유튜브 배너 광고,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, 옥외광고, 지하철·버스광고 등 ex) 광고 매체 집행 계약 등	공고료 및 광고료
공고 및 광고를 위한 기획·제작·디자인 등 창작 활동이 포함되는 용역계약 ex) 브랜드 영상 기획·제작 및 광고, SNS 콘텐츠 제작 및 공고 ex) 광고 콘텐츠 납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등	일반용역비

○ [임차료 및 일반용역비]

- **임차계약 및 용역계약**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‘계약’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

* 경쟁입찰 원칙 내용 관련 ‘추정가격’이 기준임, 추정가격은 공급가격이 기준

- **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: 경쟁입찰 원칙** → 2천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후 거래
(참고: 24.12.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, 2단계 경쟁 등 입찰조항 등 적용 범위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으로 개정)
- **2천만 원 이하의 계약: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**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
(참고: 24.12.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, 제21조의2가 신설되어 수의계약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이 원칙)
- **수행기관의 임직원(직계 존비속 포함) 운영 업체, 단체, 계열사와 거래 불가**
- **(권소사업 사업 해당)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임차, 위탁거래 불가**

- 동일 업체와 다른 목적으로 2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1건의 계약으로 간주, **동일 업체와의 거래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후 거래**(동일 거래처를 기준으로 일반·수의계약 등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계약 건에 대해 e나라도움 자동추출)
- 임차료는 콘텐츠 기획/개발에 필요한 스튜디오 임차,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(장비), ASP 서비스, SaaS 서비스 (생성형AI) 등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, **사무실 임차료 불가**
- [운영비]-[임차료] 편성 시 사업에 필요한 행사장, 팝업 공간 등은 자부담 우선 편성
- [운영비]-[일반용역비] 편성 시 총 사업비 기준 30% 이하로 편성 가능

[참고]

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

- 유흥업종 : 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- 위생업종 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※ 야간시간(23시 이후), 주말(공휴일) 카드사용 시 소명서 작성 필요

[참고] 진흥원 내부규정 /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, 자체 규정 적용하되 해당 근거 규정에 대한 제출 필수

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등급/대상	지급금액			비 고
학술 행사비	1등급*	500,000(발표자, 사회자, 토론자)			
	2등급*	400,000(발표자, 사회자, 토론자)			
	3등급*	300,000(발표자, 사회자, 토론자)			
강사료	1등급*	300,000/시간			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
	2등급*	200,000/시간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
심사(평가)비		100,000원/시간 ※ 1일 최대 6시간 인정			국외 : 실소요액
일반 자문비		100,000원/시간 ※ 1일 최대 3시간 인정			국외 : 실소요액
법률 등 자문비		실소요금액			법률, 세무, 회계 등에 관한 자문
원고료 (외부인사)	원고료	등급	대상자	적용기준	※가중치 적용 (기준액 120% 범위 내) － 원고내용, 등급, 사안의 중요성,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
		가등급	1. 대학원 및 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전임강사 이상 2.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. 언론기관, 전문기관,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(집행간부) 및 부장급 이상 4. 기타 1호~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	40,000원/1장 (A4)	
		나등급	1.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“가”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	32,000원/1장 (A4)	
	디자인료	○ 50,000원/장 (PPT 기준)			
번역료	외부인사	○ 외국어 ⇒ 한국어 : 30,000/A4 1매			1장미만 번역 시 외국어 → 한국어 5만원 한국어 → 외국어 10만원
		○ 한국어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			
		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			
감수료		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		

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2등급 : 대학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/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
※ A4 1매 = 200자 원고지 4장 = 800자 이상 이어야 함(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 기준)

※ 번역 결과물이 영어·기타 언어인 경우 A4 1매당 기준은 230단어 이상 이어야 함

※ 원고료,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(내부직원 지급 불가) / 사업특성으로 인한 기준단가 초과 집행 시 사유 명시하여 진흥원과 사전 협의